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삭제하고, 총액 인건비제를 통해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행정서기보 2명)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전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총리령 제 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같다”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488”을 “4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5”를 “48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u>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같다.</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488</u>		<u>486</u>	-2	
·			·		·		
·			·		·		
일반직	계		<u>485</u>		<u>483</u>	-2	
·			·		·		
·			·		·		
행정서기보			<u>4</u>		<u>2</u>	-2	
·			·		·		
·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업집단국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2)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1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2021년 9월 30일까지
3)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1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2021년 9월 30일까지
4)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9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
5)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9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2021년 9월 30일까지